

한의학대학 학사 내규

- 한의학대학 교육과정 시행세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대구한의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한의학대학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의학대학 조직과 학사운영,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과 교육목표) 본 대학교 한의학대학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체와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인격인, 전문지식과 소양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성인, 참된 의료와 보건의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적 실천인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인간을 존중하는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을 갖춘다.
2. 인류와 사회의 건강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다한다.
3. 한의학 기초이론을 탐구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
4. 의료인으로서 진료에 필요한 임상지식과 진료수행 능력을 기른다.
5.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임상현장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다.
6. 인류 및 보건의료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의료전문직업성을 함양한다.

제3조(졸업성과, 시기성과, 과정성과) 한의학대학의 교육과정은 졸업성과, 시기성과, 과정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 졸업성과는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구성한다.
2. 시기성과는 졸업성과와 연계하여 기초이론시기, 임상이론시기, 임상실습시기로 구분하여 성과를 둔다.
3. 과정성과는 의학-한의학 입문과정, 한의학 이론 심화과정, 한의학 임상 이론과정, 한의학 임상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성과를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4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본 대학교 학칙 제5조에 따라 한의학대학은 한의예과 2년, 한의학과 4년으로 한다.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5조(학년과 학기) 본 대학교 학칙 제6조에 따라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① 학년은 1학기과 2학기로 나누며, 이와는 별도로 방학 중에 계절 학기를 따로 둘 수 있다.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과, 전공, 학년별로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정규학기 중 학생 스스로 설계한 도전과제를 수행하는 기린도전학기제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수업일수) 본 대학교 학칙 제7조에 따라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에서 감할 수 있다.

② 학업전념 목적의 집중적 수업참여가 필요한 경우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휴업일) 본 대학교 학칙 제8조에 따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하계방학: 1학기 수업종료후 - 2학기 개강 전일
- 2. 동계방학: 2학기 수업종료후 -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3. 개교기념일 (9월 16일)
- 4. 일요일 기타 법정공휴일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방학기간의 변경이나 임시 휴업일을 정할 수 있으며, 또한 휴업일이라도 실험·실습이나 기타 수업을 과할 수 있다.

제 4 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 1 절 시 기

제8조(입학시기) 본 대학교 학칙 제9조에 따라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 2 절 자 격

제9조(입학자격) 본 대학교 학칙 제10조에 따라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 1. 고등학교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3. 한의학과는 본 대학교의 한의예과 수료자를 그대로 진학시키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와 동등한 자격자를 입학시킬 수 있다.

제10조(편입학) 본 대학교 학칙 제11조에 따라 ① 본 대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해당 학년이나 학기를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②학사 학위를 가진 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원외로 3학년에 학사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재입학) 본 대학교 학칙 제12조에 따라 ①재입학은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정원)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재입학은 제적전 재적하였던 원적학부(과) 및 전공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모집중지된 경우 유사학부(과) 및 전공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부(과) 및 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징계를 받은 학생은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제 5 장 휴학, 퇴학, 제적 및 복학

제 1 절 휴학 및 복학

제12조(휴학) 본 대학교 학칙 제20조에 따라 ①질병, 군입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제13조(휴학기간) 본 대학교 학칙 제21조에 따라 ①휴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병역(지원입대 포함)
2. 유급에 따른 휴학
3. 임신, 출산 및 육아 : 최대 2년
4. 창업 : 최대 2년
5. 질병 등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복학) 본 대학교 학칙 제22조에 따라 ①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소정의 기간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간 이후 복학을 신청한 자는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2 절 퇴학 및 제적

제15조(퇴학) 본 대학교 학칙 제23조에 따라 질병 기타 사유로 퇴학을 원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써 사유를 명시한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6조(제적) 본 대학교 학칙 제24조에 따라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 기간 만료 후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무계출 결석 1개월을 초과한 자.
4.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5. 징계처분으로 퇴학이 결정된 자.
6. 재학 기간 중 통산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단, 별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교육과정, 수업, 시험, 성적 및 졸업

제 1 절 교육과정

제17조(교과과정) 본 대학교 학칙 제25조에 따라 ①본 대학교의 교과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일반선택과정으로 구분한다.

②교과과정의 신설과 폐지, 편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부서별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8조(교과목 이수단위) 본 대학교 학칙 제26조에 따라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 실습, 실기, 체육실기,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19조(교양과목) 교양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이수를 구분하며, 한의예과 과정에서는 교양필수 8학점을 포함하여 영역 구분 없이 총 1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제20조(전공과목) 한의예과와 한의학과의 전공과목에서는 기초한의학, 임상한의학, 의료인문학, 양방의학 및 의생명과학, 과학적 의학연구 및 근거중심의학, 임상실습 및 선택실습 등 다양한 영역의 과목을 개설해야 하고, 수평 혹은 수직 통합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한의예과에서는 전공과목을 6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한의학과에서는 전공학점을 16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 임상실습은 1,2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및 선택실습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 2 절 수 업

제21조(강의시간표) 본 대학교 학칙 제27조에 따라 ①강의시간표는 매학기 개강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매 학기 원격수업은 학기별 각 교양, 전공(학과)의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재난 및 재해,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내 원격수업 개설 학점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에 참여한 학과의 개설 가능한 원격수업 학점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21조의2(강의시간표 편성) 본 대학교 학칙 제27조의 2에 따라 ① 강의시간은 60분(50분 수업 및 10분 준비) 및 90분(75분 수업 및 15분 준비) 단위로 편성한다. 단, 야간 강의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업시간은 다음 시간대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시		시간	
교시	구분	50분 수업	75분 수업
1	1A	09:00~09:50	09:00~10:15
	1B		
2	2A	10:00~10:50	10:30~11:45
	2B		
3	3A	11:00~11:50	11:30~12:45
	3B		
4	4A	12:00~12:50	12:30~13:45
	4B		
5	5A	13:00~13:50	13:30~14:45
	5B		
6	6A	14:00~14:50	14:00~15:15
	6B		
7	7A	15:00~15:50	15:30~16:45
	7B		
8	8A	16:00~16:50	16:30~17:45
	8B		
9	9A	17:00~17:50	17:30~18:45
	9B		

제21조의3(휴강 및 보강) 본 대학교 학칙 제27조의 3에 따라 ①교원은 공무출장, 학회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하고자 할 경우 휴·결강 및 보강원을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학생에게 휴강 및 보강계획을 공지하고 지정된 일정에 보강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보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원역량강화시스템을 통하여 교학처로 제출한다.

④ 학기 중 공휴일 등 휴무일이 발생할 경우 보강일을 지정하고 이를 학사력에 반영한다.

제22조(수강신청) 본 대학교 학칙 제28조에 따라 ①한의예과 학생은 학기당 23학점까지, 한의학과 학생은 학기당 24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②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와 해당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일단 수강 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그 개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의 승인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수강신청의 변경 허가는 학기초 2주일 이내로 한다.

④학생은 매학기 교내 원격수업의 수강신청 학점은 제한이 없으며 별도로 협정을 체결한 국내대학의 원격수업은 6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다. 다만,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원격수업으로 이수할 수는 없다.

⑤교수 자녀 간 강의수강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필수 교과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 신청할 경우 강의 담당 교원은 사전에 교무처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절 시 험

제23조(시험) 본 대학교 학칙 제30조에 따라 ①시험은 매학기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구분하되 정기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하고 임시시험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각 교과목의 당해학기 총수업 시간수의 3분의1 초과 결석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없다. 다만, 한의학과는 4분의1 초과 결석한 자로 한다.

③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전(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조기 및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다만, 추가시험의 성적은 B급 이하로 한다.

④성적이 F급일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절 성 적

제24조(성적평가) 본 대학교 학칙 제31조에 따라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출석, 예습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등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은 이를 따로 평가할 수 있다.

제25조(성적등급 및 평점) 본 대학교 학칙 제32조에 따라 성적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등 급	실취득점수	평 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D+	65 ~ 69	1.5
D	60 ~ 64	1.0
F	0 ~ 59	0.0

제26조(학점인정) 본 대학교 학칙 제33조에 따라 ①각 과목별 성적은 D급 이상을 급제로 하여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②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③일단 인정한 학점일지라도 과오 또는 부정으로 인정된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 또는 정정한다.

④편입생 및 조기취업생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본교에서 제작한 K-MOOC강좌를 K-MOOC플랫폼에서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졸업학점의 12학점 이내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국·내외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학 중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학생 스스로 설계한 도전과제를 수행한 경우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재학 중 최대 18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타 대학교 이수학점 인정) 본 대학교 학칙 제34조에 따라 ①학생은 재학기간중 필요에 따라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 또는 국외의 타 대학(교)에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학점인정에 관한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대학원 석사과정 이수학점 인정) 본 대학교 학칙 제35조에 따라 ①105학점이상 취득한 학생으로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허락을 얻어 학기당 취득 기준 학점수의 범위안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교과목의 취득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학기별 수료학점 및 한의학과 진급) 본 대학교 학칙 제36조에 따라 ①각 학기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수료인정학년	한의(예)학과 이수학점
1-1	20학점 이상
1-2	40학점 이상
2-1	60학점 이상
2-2	80학점 이상
3-1	100학점 이상
3-2	120학점 이상
4-1	140학점 이상
4-2	160학점 이상

②한의예과 과정을 수료한 자는 한의학과 진급을 인정한다.

제30조(유급) 본 대학교 학칙 제37조에 따라 ①성적이 부진한 중도수료 대상자중 자질이 우수하여 학업성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②유급은 재학중 학기 단위로 한다.

③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절 졸 업

제31조(졸업논문) 본 대학교 학칙 제38조에 따라 ①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의학과는 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현장실습, 실기 발표, 기타 다양한 제도를 선택시행 할 수 있다.

②졸업논문은 최종학기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자격인정) 본 대학교 학칙 제39조에 따라 재학생은 본 대학교가 시행하는 제 인증제의 인증심사를 받아 소정의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졸업 및 학위) 본 대학교 학칙 제40조에 따라 ①한의학과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본 대학교 학칙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졸업생으로서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할 수 있다.

④4학년말에 소정의 전과정(졸업논문 포함)을 이수하지 못한 자가 다음 1학기 말에 소정의 전과정(졸업논문 포함)을 이수한 경우에는 후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 대상자가 후기졸업에 해당할 때도 또한 같다.

⑤졸업예정자가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하여 계속 수학을 원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⑥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한의학과 학생은 반드시 졸업 시까지 인문학 교양과목을 최소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33조의 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본 대학교 학칙 제40조의 2에 따라 ①학점 이수 등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본인 원에 의하여 추가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등록금은 학칙시행세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본교 재학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학적을 부여하고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④학사학위취득의 유예는 1개 학기 단위로 신청하며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⑤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허가받은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제33조의3(학위 수여의 취소) 본 대학교 학칙 제40조의 3에 따라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다전공자 학위증 표기) 본 대학교 학칙 제41조에 따라 다전공자의 학위증 표기는 하나의 학위증서에 이수전공과 학위명을 모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전공) 본 대학교 학칙 제42조에 따라 한의학과 학생은 소속 모집단위에서 주전공(제1전공)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부 입학생의 제1전공은 반드시 소속 학부 내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제36조(포상) 본 대학교 학칙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제37조(징계) 본 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본 학칙 제19장의 각 규정을 위배한 자. (개정 '13. 4.23.)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38조(학사경고) ①재학중 매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에 미달된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한다. 단 한의예과 학생은 평균점수 65점에 미달된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한다.

②재학중 징계에 의하여 근신 이상의 처분을 받을 때에는 학사경고를 병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이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